

■ 건축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5. 6. 2.> 세움터(www.eais.go.kr)에서도 신청(신고)할 수 있습니다.

건축물 []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 멸실 신고서

•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허가(신고)번호		접수일시	처리일	처리기간
				3 일
건축물	위치			
	연면적 합계	m ²	해체 건축물 수	주 건축물 (동) 부속 건축물 (동)
관리자	성명(법인명)		생년월일(사업자 또는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시공사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건설업면허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감리자 (※ 해당하는 경우 작성)	성명(대표자명)	상호명	자격번호	
	(서명 또는 인)			
	주소 (전화번호:)		신고번호	
건축물 해체	사유			
	해체공사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석면 함유재 존치 여부	[] 천장재(아스칼텍스, 아미텍스 등) [] 지붕재(슬레이트 등) [] 천장단열재(석면포)		[] 바닥재(아스타일 등) [] 파이프보온재(석면포) [] 기타	
하수처리시설 철거 여부	[] 철거함 [] 철거하지 않음			

「건축물관리법」 제33조·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서 또는 건축물 멸실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이름
성명
성명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 귀하

건축물 해체공사 완료신고 첨부서류	1. 해체감리완료보고서 사본 2. 건설폐기물 처리 세금계산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서 발급한 처리 확인서 등 건설폐기물 반출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